



■ 조정대상보도뿐 아니라 인터넷에 확산된 펌글·댓글로 인한 피해도 일괄 구제

C방송은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20대 여성들의 남성 기준”에 관한 주제 영상을 방송하면서, 일반인 출연자인 신청인들이 남성의 조건으로 ‘외제차’, ‘연봉 5천만원’ 등을 언급하는 장면이 신청인들의 실제 의견인 것처럼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해당 발언은 제작진들의 요구에 따른 것인데도 설정된 상황이라는 설명 없이 실제 상황인 것처럼 방송되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댓글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항의를 받은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단한 점, 두 차례에 걸쳐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한 점, 또한 방송 이후 신청인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게시물 작성자들에게 삭제를 요청했던 점 등을 인정하여 금전적인 손해배상 대신 방송 중 자막으로 정정보도를 2회 게재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또한 일정 기간 동안 신청인이 피해를 호소하는 게시물 및 댓글이 게시된 URL을 알려줄 경우 피신청인이 즉각 게시자에게 삭제 요청할 것을 권유했다. 이에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상표를 여과 없이 보도한 방송, 정정보도문 게재

A방송은 값싼 중국산 전자담배가 폭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 회사 제품의 상표만 모자이크 처리 없이 자료화면으로 방송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보도 대상인 저가(低價) 중국산 제품과 달리, 신청인 회사 제품은 이중보호회로장치가 있어 폭발과는 무관한데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 상표가 드러난 제품을 여과 없이 보도해 제품의 안정성에 의혹이 제기됐고, 실제로 매출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방송은 신청인 회사 상표를 전자담배의 전원 버튼으로 오인해 모자이크 처리 없이 방송했다고 인정하고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사를 밝혔으나 조정대상보도가 매출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에는 난색을 표했다.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보도 과정의 실수를 인정했고, 피해구제를 위해 신속하게 정정보도할 것임을 약속한 점, 또 매출 감소 원인이 조정대상 보도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정정보도만으로도 충분한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들어 정정보도에 합의하도록 양 당사자에게 권유했다. 이에 양 당사자는 중재부 권유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경찰관의 과장·왜곡된 비위사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B신문은 경찰관인 신청인이 의무경찰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고, 부하 소대장들에게 술값을 반복적으로 대납하게 한 비위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전보 조치만 이뤄져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있었으며, 전 청와대 경호실장의 친동생이라는 이유로 낙하산 인사가 의심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

해 신청인은 서울지방경찰청 감찰 결과 부대 운영상 몇 차례 욕설한 것은 사실이나 보도내용이 과장됐고, 부하들에게 술값을 대납시킨 사실은 없으며 신청인의 보직은 정당한 인사였다고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중재부는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신청인이 부하 대원에게 욕설 등을 한 행위는 인정되나 술값을 대납하게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음이 밝혀져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게재함과 동시에, 신청인뿐만 아니라 제3자의 명예까지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낙하산 인사 관련 내용은 삭제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양 당사자가 중재부의 조정안을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건보도에 사용된 유명 한의사의 방송자료화면, 삭제로 합의

D방송은 쌍둥이를 낳게 해준다는 등의 비상식적인 진료를 한 한의사에 대해 한의사 협회가 보건복지부에 의사 자격정지를 요구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신청인의 과거 한의사 협회 자격 정지 전력과 함께 흡소핑 출연 당시의 모습을 내보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사건과 무관한 신청인의 흡소핑 출연 영상을 함께 사용하여 마치 비상식적인 진료를 한 한의사가 신청인인 것처럼 보도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결과, 중재부는 한의사 관련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해당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신청인의 과거 징계 사실과 자료화면을 보도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피신청인에게 전달하면서, 피신청인의 유감표명과 함께 해당 보도의 ‘다시보기’ 영상에서 신청인 관련 부분을 삭제하는 선에서 합의할 것을 권유했다. 이에 양 당사자는 중재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됐다.